■ 전파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의2서식] <신설 2026. 10. 22.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또는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무선국 준공신고서

(「전파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
신고인 (시설자)	법인명		법인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-) (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)		
정보통신공사업자	법인명	㊞	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	
	주소 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)	(-) (담당자: 전화: 팩스: 전자우편:)		
개설허가 · 신고 (변경 포함)문서번호			준공기한	
무선국명 및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			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
용도지역(전자파 강도 보고 대상 무선국만 해당합니다)				

「전파법」 제24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선국을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「전파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	수수료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96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기재요령

용도지역: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지역을 말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·공업지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적습니다.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송신안테나가 설치된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용도지역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